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Phone : +82-70-8799-8328/8331
Fax : +82-70-8799-8339
E-mail : convention@krs.co.kr
Person in charge: JEON, Gyejeong

No : 2022-ETC-04
Date : 13 December 2022

제목 : 고체산적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증서발급시스템 변경

최근 우리 선급은 고체산적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각종 증서발행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자 해당 증서발급시스템¹의 개선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발행되는 고체산적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각종 협약증서(IMSBC 증서², CDG 증서³ 및 SOLAS FFEA⁴ 면제증서)의 기재사항이 아래에 상술된 바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이는 **2022.12.28** 이후 최초 발행, 갱신 또는 재발행되는 증서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동 문서 상의 조치는 우리 선급의 증서발급시스템 개선에 따른 변경이므로, 기존 증서가 보증하고 있는 선박의 상태 및 운송 가능한 화물들은 일반적으로 유지(IMSBC Code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은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IMSBC 증서 및 CDG 증서 상 기재되는 고체산적화물명 단일화

IMSBC Code의 Appendix 1은 산적화물선적명(Bulk Cargo Shipping Name)을 기준으로 200여 개의 개별화물요건을 기술하며, 동 Code의 Appendix 4는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물 명칭 및 그에 상응하는 산적화물선적명 등을 포함한 400여 개의 화물명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급이 기 발급한 IMSBC 증서 및 CDG 증서는 IMSBC Code의 Appendix 4 상 나열된 화물 명칭들을 기반으로 운송이 허용된 고체산적화물 및 산적고체위험물들을 각각 나열하며, 선주/운항사의 요청에 따라 IMSBC Code 상 규정되지 않은 화물들을 간혹 포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증서발급시스템은 운송 가능한 화물을 산적화물선적명으로 단일화하여 표기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지거나 증서 발급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상기를 고려하여, 우리 선급은 IMSBC 증서 및 CDG 증서에 기재되는 화물명을 다음과 같이 단일화하여

¹ KR OASIS

²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

³ Document of compliance with special requirements for ships carrying dangerous goods

⁴ Fixed Fire-Extinguishing Arrangement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행(As-is)	변경 후(To-be)
IMSBC Code의 Appendix 4에 등재되는 화물명 및 IMSBC Code에 등재되지 않은 화물	IMSBC Code의 Appendix 1에 수록된 산적화물선적명 (단, IMSBC Code에 등재되지 않은 화물은 IMSBC Code 1.3항을 고려 관련 증서에서 삭제 예정 ⁵⁾)

이에 따라, 기 발급된 IMSBC 증서 및 CDG 증서 상 기재된 운송 가능한 화물들의 명칭은 아래 분류된 바와 같이 조치될 예정입니다. 상세 변경내역은 첨부 1의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IMSBC 증서 및 CDG 증서 상 기재된 운송가능한 화물	조치계획
Case 1	화물명이 IMSBC Code의 Appendix 1 상의 산적화물선적명(BCSN)과 동일함	유지
Case 2	화물명이 IMSBC Code의 Appendix 4에 포함되었으나, Appendix 1 상의 산적화물선적명(BCSN)과 동일하지 않음	IMSBC Code의 Appendix 1에 표기된 화물명으로 변경
Case 3	화물명이 IMSBC Code의 Appendix 1 및 Appendix 4 상의 화물명과 동일하지 않음 (즉, IMSBC Code 상 규정되지 않은 화물)	삭제 ⁵⁾

2. IMSBC 증서 상 표기되어야 하는 Note

IMSBC 증서는 선박의 배치, 설비 및 장비 등이 특정 고체산적화물의 운송에 적합함을 증명하며, 선박은 IMSBC Code 상의 운항 요건들을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KR이 발급하는 IMSBC 증서는 특정 화물의 운송을 위한 제한사항들을 Note로서 부기할 수 있으며, 금번 증서발급시스템 개선작업을 통해 IMSBC SOC에 명기되는 Note를 첨부 2와 같이 표준화 예정입니다. 다만, 첨부 2에 추가하여 필요 시 다른 Note가 IMSBC SOC에 직접 입력될 수도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3. SOLAS FFEA 면제증서 양식 변경

SOLAS II-2/10.7.1.4에 따라 화재위험성이 낮은 화물⁶만을 운송할 경우 화물구역에 요구되는 고정식 가스소화장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관련된 화물목록이 첨부된 SOLAS FFEA 면제증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금번 증서발급시스템 개선작업의 일환으로서, 해당 증서의 오기를 줄이기 위해 해당 증서에 첨부되는 화물 목록이 첨부 3 및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⁵ IMSBC Code에 등록되지 않은 화물은 원칙적으로 운송가능한 고체산적화물 및 산적고체위험물로서 각각 IMSBC 증서 및 CDG 증서 상 기재될 수 없음. 그러한 화물은 IMSBC Code의 1.3항에 따른 일련의 조치 후에 선적될 수 있으며, 선적항의 당국이 발급한 증서가 선장에게 제공되어야 함

⁶ 개정된 MSC.1/Circ.1395 참조

현행(As-is)	변경 후(To-be)
SOLAS FFEA 면제증서에 첨부되는 화물 목록은 선박이 운송하도록 허용되고 MSC.1/Circ.1395의 부록 Table 1 ⁷ 에도 포함된 화물들 만을 수록하도록 제한됨	SOLAS FFEA 면제증서에 첨부되는 화물 목록은 개정된 MSC.1/Circ.1395의 부록 Table 1 ⁶ 상 식별된 모든 고체산적화물들을 수록함

다만, 상기와 같은 조치가 SOLAS FFEA 면제증서에 수록된 모든 화물들의 운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요청사항

KR 현장검사원은 선주/운항자와 협의하여 개선된 증서발급시스템에 따라 **2022.12.28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정기검사 시까지 IMSBC SOC, CDG DOC 및/또는 SOLAS FFEA 면제증서⁸를 발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 해당 증서들을 재발급하도록 요청 드립니다.

다만, 선주/운항자는 **2022.12.28** 이후 개선된 증서발급시스템에 따라 IMSBC 증서, CDG 증서 및 SOLAS FFEA 면제증서들을 자발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 신청⁹ 을 통해 재발급 요청 바랍니다. (끝)

첨부 1 - 고체산적화물명의 변경

첨부 2 - IMSBC 증서 상 표기되는 표준화된 Note

첨부 3 - 변경되는 SOLAS FFEA 면제증서 양식

* 배부처: 모든 검사원, 선주, 관련 업계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

⁷ 개정된 MSC.1/Circ.1395의 부록 Table 1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가 면제될 수 있는 고체산적화물의 리스트”를 수록

⁸ KR이 직접 발행한 SOLAS exemption certificate for FFEA에만 해당 (기국이 직접 발행한 증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⁹ KR 지부 또는 KR e-fleet (<https://e-fleet.krs.co.kr/>). 선주/운항자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증서 발급의 경우에도 검사수수료(해당되는 경우 기국의 증서수수료를 포함)는 청구됨